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침

제정 2023.07.1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약으로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시기)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연 1회 지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정산 또는 연차보고가 완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
간접비	연구개발능률성과급
2천만 원 이상	2백만 원 + 2천만 원 초과 간접비 징수액의 7%
2천만 원 미만	간접비 징수액의 10%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본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4조(지원형태)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게 배분을 요청한 경우)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제한) ① 지원기관의 별도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「간접비 징수 및 관리·운영 지침」에 따른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은 연구과제의 경우 동 지침에 따른 징수율로 계상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에 배분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한다.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시기 이전에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련 목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경비처리된 금액을 제하고 지원한다.

③ 연구사업의 중단, 실패, 결과 미제출, 회계오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전 지침(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지침 2023년 07월 13일 폐지)에 따른다.